

창원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가단12973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3. 6. 15.

판 결 선 고 2023. 8.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 소송수계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21. 4. 26. 접수 제1683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A은 D를 운영하던 중 2019. 6. 28.경 및 2020. 7. 1.경 각 신용보증기금의 일부 보증하에 E은행으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2021. 9. 30.부터 이자를 연체하여 2021.

10. 18.경 신용관리정보등록 등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E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2022. 1. 25. A의 대출원리금 중 보증범위 내인 합계 100,148,77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그런데 A은 2021. 4. 2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21. 4. 26. 접수 제16833호로 채권최고액 2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설정등기)’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A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과 거제시 F 전 109㎡가 있었는데,2)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약 203,697,000원이었고, 위 F 토지의 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4,022,100원3) 이었다. 한편, A은 소극재산 합계액이 4억 7,000만 원을 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신용보증기금은 2022. 1. 27.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해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A은 2021. 11.경 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22. 8. 22. 파산선고 결정이 내려졌고(2021하단11398), 그에 따라 파산관재인 B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A이 파산신청 사건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의하면, 채무 원리금 합계액이 824,024,135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5664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은 이미 채무초과에 이른 상태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이미 채권최고액 168,0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은 약 203,697,000원에 이르므로,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이 되는 부분이 있다)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25,000,000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바, 이는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으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특정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파산재단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행위임과 동시에 특정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편파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법 제391조 제1호에 따른 부인의 대상이 된다.

3) 그렇다면 파산관재인인 원고 소송수계인의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 소송수계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2018. 2.경부터 A과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계속적 거래를 하던 중 2021. 4. 21. 기준으로 A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 20,735,957원, 대여금채권 3,000,000원이 있어 그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일 뿐, A의 위 행위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위 대법원 2011다56637,566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 즉, 피고 채권의 발생 경위, 근저당권 설정 및 채권최고액 산정의

경위, 별도 지불각서 및 연대보증확인서(갑 7호증)의 수령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으로 다른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피고가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민정

1) 원고 소송수계인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부인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는 취지이므로, 부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선택한다.

2) 거제시 G 토지 및 건물은 A이 2021. 4. 20. 누나 H에게 매도하고, 같은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공시지가에 따른 가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예에 비추어 약 4배까지 계산해 보더라도 약 16,100,000원 정도가 될 것이다.